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제공하여 AI 시대 대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지침을 위해 2022년 4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나, 최근의 이미지·음성·영상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4. 2. 2. 해당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배경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처럼 가명처리하게 되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고 해도 그 위험성이 적습니다.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신기술을 위하여 이용할 때 일일이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산업계의 큰 위축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관련 위험을 줄인 후에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는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의료기술 연구, AI 학습 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은 다양한 연구사례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해당 사례의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매번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2년 4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선보였으나, 정형적인 데이터만 다루고 있어 음성·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도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선요구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2. 2. 해당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AI 시대를 강조하며 AI기술의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개정 부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활용의 특수성 및 고려사항	개인식별 판단의 어려움 - 처리목적 및 환경 등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한 식별가능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가명처리 기술의 불완전성 - 이미지·영상 등 데이터에서 가명처리 대상인 개인정보를 모두 완벽하게 식별할 기술 부재
	재식별 공격 위험 - AI 및 데이터 복원 기술 발달로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 없이도 개인 재식별 공격 위험 증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본원칙	데이터 처리 목적·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수준 설정
	가명처리 기술의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준비단계(연구 및 기술개발 기획 시)부터 위험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수행
	데이터 복원기술 발달 등에 대응하여, 가명처리된 비정형데이터 활용 시 관련 시스템·SW의 접근·사용 제한 등 통제방안 마련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단계별 고려사항	1단계 -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 비정형데이터 내 개인식별 가능성 항목 도출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명처리 대상 선정
	2단계 - 위험성 검토 - 개인식별 가능성 높은 정보 항목 검토 - 처리 환경의 정보 식별 위험성 검토 - 위험성에 근거하여 가명처리 방법·수준 결정
	3단계 - 가명처리 단계 - 가명처리 필수 항목과 비필수 항목을 구분하고, 합리적인 방법과 수준으로 가명처리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적용 시, 기술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관련 근거 보관 -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추가검수 등 필요
	4단계 - 적정성 검토 단계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처리 목적, 위험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가명처리 결과 적정성 등 검토
	5단계 - 안전한 관리 단계 - AI 학습·연구개발 시 해당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 필요 - 위 경우에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이 외에도 본격적인 가명정보 처리에 앞서 비정형데이터 개인식별 위험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처리정보의 데이터와 처리환경에 대한 조치 가이드가 있으며, 특히 사업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7가지의 다양한 가명정보 처리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AI 시대를 위한 가명처리 기준이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를 위한 학습의 대상 및 AI의 산출물이 비정형데이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기에 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처리가 중요한데, 그간 마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전반에 대한 가명처리의 기준으로 보다 확실하게 기능할 수 있다면, AI의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우의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이수경

T. (+82) 2 6182 8132

파트너변호사

E. sgyi@yoonyang.com

강석준

T. (+82) 2 6182 8505

변호사

E. kangsj@yoonyang.com

백재환

T. (+82) 2 6182 8366

전문위원

E. jhb@yoonyang.com

지재원

T. (+82) 2 6003 7568

연구위원

E. jwji@yoonyang.com